- 5.4 중량물 하역 운반작업 시 안전보건조치 사항
 - (1) 중량물의 종류, 형태, 취급방법, 순서, 작업장소의 넓이 및 지형 등을 고려하여 다음 내용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.
 - (가) 주변에 지장물 등을 고려한 자재 적치 장소 확보
 - (나) 자재 적치방법, 적치 높이기준 준수
 - (다) 경사면에 원형 등의 중량물을 적치할 때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.
 - ① 구름 멈춖대. 쐐기 등을 이용하여 중량물의 동요나 이동 방지
 - ② 중량물이 구르는 방향인 경사면 아래에 근로자의 출입 금지
 - (라) 굴착면 상부에 자재적치 금지
 - (2)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자재반입, 운반작업을 통제하여야 한다.
 - (3)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는 적정 장비용량, 과부하방지장치, 권과방지장치 등 안전 장치와 아웃트리거 사용여부 등을 확인하고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여야 하며 작업시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다.
 - (가) 인양용 와이어로프 및 훅 해지장치 검사
 - (나) 운전자(조종원) 운전면허 자격 여부
 - (다) 작업반경내 출입금지 조치 및 안전표지판 설치
 - (라) 인양작업시 2줄걸이 등의 방법으로 자재 떨어짐 예방
 - (마) 신호수 배치 및 신호방법에 따라 작업실시
 - (4) 중량물을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취급 또는 운반하는 때에는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고, 신호방법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한다.